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2. 개정이유
 ○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(상위법) 및「지방공무원복무조례」(표준안)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

3. 주요내용
 ○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에 명시된 중복조항 삭제
 - 2개 조항(연가당겨쓰기, 연가일수에의 공제)
 ○ 경조사 휴가 확대
 - 출산(배우자) : 5일 ⇒ 10일
 ○ 육아시간 확대
 - 생후 1년 미만(1일 1시간) ⇒ 5세 이하(24개월, 최대 2시간)
 ○ 기타 불합리한 용어 정비
 -「공무원증규칙」⇒「국가공무원복무규칙」(인사혁신처 총리령)

4. 참고사항
 ○ 관계법령 :『지방공무원법』및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
 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271(2019.01.09.)〕
 ○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2359(2019.01.09.)〕
 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〔기간: 2019.01.24.~2019.02.12.〕
 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549(2018. 10. 4.)〕

5. 검토의견
 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상위법인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사항 삭제 및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 ○ 법리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,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,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